

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22년 10월 21일

행정·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5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행정·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2.10.21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교육지원과장 김건년)

- 천문우주과학에 대한 지식 함양과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조성 중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1)의 규정에 의거 강서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1) 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강서천문우주과학관 관리·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²⁾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」 제13조(운영의 위탁)³⁾

○ 추진 필요성

-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천문우주과학관 민간 위탁 시 운영기관의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천문과학에 대한 양질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,
- 전시시설 및 천체 투영관 등 체험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유관기관 간 정보 교류가 용이하여 운영의 전문지식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됨.

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

○ 위탁범위: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일체

2)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3) 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,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위탁내용

- 천문우주과학관에 속한 시설물, 장비, 물품, 비품 등 일체 관리
- 천문우주과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이용자 관리(설문, 통계관리 등) 및 수입금 수납관리 등의 운영관련 사항
- 그 밖의 위·수탁 협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

| |
|--|
| <p>※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시설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위 치: 방화근린공원 내(금남화로 176) · 규 모: 건축 연면적 888.84㎡ / 지하1층, 지상2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 하): 오리엔테이션실, 운영사무실 - (지상1층): 야외관측실, 프로그램실, 전시실(Ⅰ) - (지상2층): 천체투영관, 전시실(Ⅱ) |
|--|

라. 민간위탁 기간: 5년(2023. 1. 1. ~ 2027. 12. 31.) 이내

마. 수탁자 선정방식: 수탁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선정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억원

○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금액 | 산출근거 | 비고 |
|-----|---------|---|----|
| 인건비 | 219,000 | · 인건비 - 급여, 제수당, 보험부담금 등 | |
| 운영비 | 81,000 | · 기본운영비 - 시설장비 유지관리, 프로그램 운영, 사무용품구입 등 | |

사.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

○ 2022년 제4차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| 위탁사무명 | 위탁방법 | 심의결과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(강서)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 | 공개모집 | 적정 |

○ 심의일자: 2022. 9. 16.(금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2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」 제13조
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2항 제5호

나. 소관부서: 교육지원과

다. 예산조치: 2023년 민간위탁 운영·관리 예산 편성(붙임 비용추계서 참고)

라. 기 타: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(2022. 9. 16.): 적정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장석현)

-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2022년 12월 준공예정인 방화근린공원 내 시설로 소관부서(교육지원과)에서는 2022년 3월 천문우주과학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22년 9월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마쳤음
- 본 동의안은 강서천문우주과학관 관리·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서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」 제13조 제1항에 따라 “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,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” 로 규정되어 있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데 천문·우주 관찰 및 교육·체험의 시설인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같은 항 제5호 “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”에 관한 사무 중 나목에 해당하는 “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판단됨
- 또한,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”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체험 전시 및 천문우주·과학 교육프로그램의 기획·개발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
-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의 관리·운영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써 법적 요건 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또한, 강서천문우주과학관은 어린이·청소년 등 구민들에게 천문우주 과학을 쉽게 즐기고 다양한 체험활동 및 전시 등으로 과학문화 거점 공간으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해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7. 토론요지: 생략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- ※ 붙임 1. 관련자료 1부.
2. 관계법령 1부.

강서 천문우주과학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비용추계서

- 1. 비용의 발생요인 : 천문우주과학관 민간위탁
- 2. 비용추계의 전제 : 천문우주과학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
 ※ 매해 인건비,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(2023년~2027년 5년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천원)

| 연도 | | 1차년도 (2023년) | 2차년도 (2024년) | 3차년도 (2025년) | 4차년도 (2026년) | 5차년도 (2027년) | 합계 |
|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세출 | 사업운영비 | 300,000 | 315,000 | 330,750 | 347,287 | 364,651 | 1,657,688 |

4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: 3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산출내역 | 계 | 비고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|---|---------|--|-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인건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천문관 운영 인력 5명 (183,900) - 3,065,000원×5명×12개월 = 183,900천원 • 초과수당, 퇴직적립금 등 각종제수당 및 4대보험료 (35,100) | 219,000 | • 운영 인력:총 5명 (단위:천원)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천문관 관장</td> <td>1인</td> <td>3,70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운영 인력</td> <td rowspan="4">4인</td> <td>3,400</td> </tr> <tr> <td>3,115</td> </tr> <tr> <td>2,800</td> </tr> <tr> <td>2,310</td> </tr> </table> | 천문관 관장 | 1인 | 3,700 | 운영 인력 | 4인 | 3,400 | 3,115 | 2,800 | 2,310 |
| 천문관 관장 | 1인 | 3,700 | | | | | | | | | | |
| 운영 인력 | 4인 | 3,400 | | | | | | | | | | |
| | | 3,115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,800 | | | | | | | | | | |
| | | 2,310 | | | | | | | | | | |
| 운영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공 운영비 (44,200) -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- 시설장비 유지비 • 전산개발비(5,000) - 홈페이지 구축 • 사무관리비 및 각종부대경비 (19,800) - 사무용품 구입비 등 각종 부대경비 • 행사운영비 (10,000) - 공개관측회 1,000,000원×3회=3,000천원 - 프로그램 운영비 70,000원×100회=7,000천원 • 홍보비 (2,000) - 리플릿, 티켓 제작 등 각종 인쇄비 등 | 81,000 | | | | | | | | | | |

5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| 1차년도 (2023년) | 2차년도 (2024년) | 3차년도 (2025년) | 4차년도 (2026년) | 5차년도 (2027년) | 합계 |
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구비 | 300,000 | 315,000 | 330,750 | 347,287 | 364,651 | 1,657,688 |

6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 (담당자 : 행정8급 장윤희 2600-6983)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여성·청소년·아동·가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2. 노인·장애인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3. 보건·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4. 교통, 주차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5. 문화·예술·영상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6. 노동자복지, 자활,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7. 교육·교양·체육·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
8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제7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연례 반복적 사무는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.

□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

제13조(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천문우주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,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천문우주과학관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
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